

「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모집 공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 역량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 「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7. 1.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공고 개요

○ (사업명) 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 본 공고문은 주요내용 안내자료이며,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관리지침 필히 참조

○ (지원대상) 협력국 내 환경분야(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폐기물, 자원순환 등)를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투자지원

투자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를 위한 투자비용
--------	-----------------------

○ (공고 및 접수기간)

지원유형	모집차수	접수기간
투자지원사업	1차(완료)	'26.3.9.(월)~3.31.(화) 18:00
	2차(완료)	'26.5.1.(금)~6.30(화) 18:00
	3차	'26.7.1.(수)~8.31.(월) 18:00
	4차(필요 시)	'26.9.1.(화)~

※ 투자지원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은 3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 (공모 방법)

－ 기후부(알림·홍보-뉴스·공지-공지·공고), 공단(열린공간-공지사항)

○ (지원규모)

대상	규모	선정한도	지원비율	지원한도 (1건당 최대)
투자지원사업	2건 이내	우선 선정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	100억원

※ 당해연도 예산 및 신청 상황에 따라 모집·선정은 조기 종료 또는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선정 건수는 사전검토, 심의결과 등을 고려 변동 가능

2. 지원 세부사항

(1) 지원범위

○ (지원분야) 환경분야를 포함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예시 외 지원가능)

환경분야(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폐기물, 자원순환 등) 예시
①매립가스 소각 ②매립가스 발전 ③팜오일 폐기물.폐수 처리 ④퇴비화 ⑤분뇨처리 ⑥폐기물 처리 ⑦매립/바이오가스 공급망을 통한 연료전환 ⑧매립지 공기주입 ⑨산업폐기물 ⑩폐수처리(혐기성) ⑪폐수처리(호기성) ⑫농업부산물 연료화 ⑬산림부산물 연료화 ⑭바이오매스 연료화 ⑮바이오디젤 ⑯소수력 발전 ⑰수력 발전 ⑱조력 발전 ⑲복합 신재생(다목적 댐 활용 수상태양광 발전 등)

○ (지원기간) 공단-선정기업 협약 체결부터 사업별 종료까지

투자지원사업	○ 협약 체결일로부터 예정 가능한 설치 기간(최대 3년)
--------	---------------------------------

○ (지원항목) 투자지원금은 총 사업비(아래 지원항목의 합계)에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위탁·전담기관 국제감축실적 분배량 및 국제감축실적 가격*으로 산정

투자지원사업	○ 온실가스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
--------	--

* 관리지침 내 국제감축실적 가격 설정 기준은 협약 체결 시점의 직전 3개년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배출권(KAU) 장내거래 가중평균가격으로 올해 기준 가격은 9,563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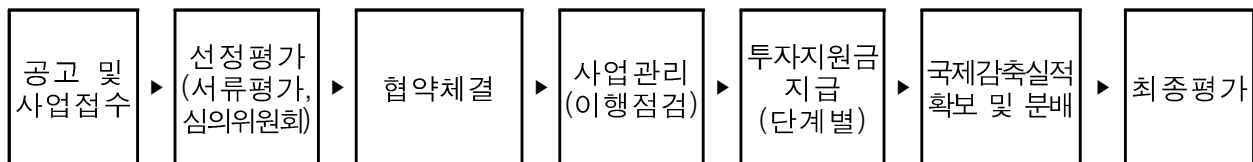
○ (민간투자금)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국내기업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
- (참여제한) 신청기업이 관리지침 제14조(신청자격 및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참여제한 및 신청서 반려

(3) 추진절차 및 일정

- (투자지원사업 추진절차)



- (투자지원사업 추진일정)

지원유형	모집차수	접수기간
투자지원사업	1차(완료)	'26.3.9.(월)~3.31.(화) 18:00
	2차(완료)	'26.5.1.(금)~6.30(화) 18:00
	3차	'26.7.1.(수)~8.31.(월) 18:00
	4차(필요 시)	'26.9.1.(화)~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사업계획에 대한 기업 PPT 발표 예정,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제출방법) 전자메일 접수

– 전자메일 제출파일 (압축파일, 파일명 : 제출일_주관기업명.zip)

ghg@keco.or.kr

※ 이메일로만 접수하며, 마감 시한까지 수신된 메일만 인정. 웹하드·클라우드 링크 불가, 대용량 파일 링크는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양식)

투자지원사업	덧붙임 3, 4 양식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제4호의1서식)
--------	------------------------------------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글로벌협력처 국제환경협력사업부
- 문의/상담 등은 이메일(ghg@keco.or.kr)을 통해 사전 문의 필수
- － (전화) 032-590-3157, 3179, 3178

○ (투자지원금 지급 방식) 지침 제20조, 별표 10

구 분	단계별 수행내용	지급한도
1단계	○ 착공 및 기반공사 완료 ○ 주요 설비 반입 및 고정 완료	투자지원금의 20%
2단계	○ 전체 감축설비 설치 완료 (기계·전기·배관 포함 전 공정 설치 완료)	투자지원금의 20%
3단계	○ 시운전 완료	투자지원금의 40%
4단계	○ 국제감축실적(ITMOs) 최초 이전	투자지원금의 20%

※ 다만, 사업 대상국 관련 정부로부터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허가서(Letter of Authorization)를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해당 확보 시점의 공정 단계에 한하여 지급한도에 20%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사업신청서 사전검토) 지침 제15조

- 사전검토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7일 이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투자지원사업	○ 예타/본타 보고서 제출 필요, 지원기간 내 감축설비 설치가 가능할 것
타당성조사	○ 본타 지원사업은 예타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서, 예타 보고서 등 제출 필요

※ 사전검토 및 서류평가 결과 현저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선정평가 기준) 지침 제16조, 별표 4의1 및 4의 2

평가기준	신청기업의 적정성 (20점)	(1)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실적 (5점) (2) 해외 사업 수행 실적 (5점)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점)	
	기후변화 기본협정 체결국 (10점)	(1) 기본협정 체결국 및 가서명국 ('25.11월 기준)	
		구분	국가명
		체결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가봉, UAE, 페루, 모로코,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가서명	스리랑카, 가나, 방글라데시, 조지아
		(2)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한 협력 약정 체결국 ('26.2월 기준)	
		구분	국가명
		기후부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나마
		산업부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산림청	라오스, 온두라스	
	※ '26년 2월 기준 기후변화기본협정 체결국을 적용하되, 이후 추가 체결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가점 적용 가능		
정성평가 (70)	사업의 적정성(30점/35점), 국제감축사업 진행(30점)/연계 가능성(25점), 사업 추진효과(10점)		
선정방법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 (최고/최저 점수 제외) 중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결과통지	선정결과 개별 통보(공문 발송)		

※ 신용평가등급은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평가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협약 및 이행 보증) 지침 제17조, 별지 제6호의1 및 제6호의2 서식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공통 사항 (투자지원/타당성)	○ 협약 이행 보증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보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투자지원	○ 설치기간 이후(양도 개시 이후)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용 보험증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 신청) 지침 제20조
 - 정부지원금 신청 시에는 정부지원금 반환 의무 이행 보증(보험)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비용인정 기준) 지침 제3조, 별표 3의 1, 별표 3의 3
 - 투자지원사업의 경우 운영비(컨설팅비, 행정비용,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토지구입비 및 시설철거비 등 기타 비용 지원 불가
- (후속사업 연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기후부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본타 또는 투자지원사업으로 우선 연계 추진할 수 있음
- (규정 준수) 지원기업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이 부담
 - 단계별 수행 사항이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강화기준 적용례) 강화된 제재조치 및 감축실적 분배는 시행일 이후 협약한 사업에 적용

- (감축실적 발행 절차) 지원기업은 감축설비 설치 완료 후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보고하고 감축실적 발행 절차 이행
- (감축실적 분배 기준) 지침 제9장, 별표 6, 별지 제6호의1 서식
 -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은 공단과 지원기업간에 분배하며, 공단이 분배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양)은 지급된 정부지원금 대비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구 분	고정형	변동형
협약체결시점 지원기업 결정	연간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상 투자지원금 상환액을 협약 체결 시점의 국제감축실적 가격으로 나누어 산정	연간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상 투자지원금 상환액*을 국제감축 실적 발급 시점의 국제감축실적 가격으로 나누어 산정

* 변동형 분배방식 선택시 연간 국제감축실적 분배 계획상 투자지원금 상환액은 총 투자지원금 지급 완료 시점에서부터 국제감축실적 발급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고려한 대표금리 (발급일자 기준 전일부터 직전 1년간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로 할증하여 산정

※ 국제감축실적 가격은 투자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시 결정

※ 관리지침 내 국제감축실적 가격 설정 기준은 협약 체결 시점의 직전 3개년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배출권(KAU) 장내거래 가중평균가격으로 올해 기준 가격은 9,563원임

Q. 중소·중견기업만 신청 가능합니까?

A. 아닙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발굴·추진할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단, 공고문에 게시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 기업분류에 따라 지원규모의 차이가 있나요?

A. 아닙니다. 투자지원사업은 총사업비 중 투자비의 50% 이내로 지원하고, 타당성조사 사업은 조사비용의 90%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상황 및 예산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동일 기업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예타/본타/투자** 중 1개의 지원사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업에 대해 예타와 본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선정평가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 이후 사업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Q. 정부지원금 산정방법은?

A. (예시1) 투자 지원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가 300억원이고 이 중 시설설치 투자비가 250억원, 총 운영비가 50억원(연간 5억원, 10년 운영)일 경우, 시설설치 투자비인 250억원의 50% = 125억원이나, 지원한도(100억원)를 초과하므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설치 투자비 및 운영비 200억원은 민간 부담

(예시2) 투자 지원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고 이 중 시설설치 투자비가 80억원, 총 운영비가 20억원(연간 2억원, 10년 운영)일 경우, 시설설치 투자비인 80억원의 50% = 40억원이며, 지원한도(100억원) 이내이므로 최대 40억원 지원하고, 총 사업비에서 투자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설치 투자비 및 운영비 60억원은 민간 부담

(예시3) 예타 지원대상 사업의 총 조사비용 5억원으로 신청한 경우, 최대 지원비율(90%)은 4.5억원이나, 지원한도(3억원)를 초과하므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총 조사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은 민간 부담

(예시4) 본타 지원대상 사업의 총 조사비용 7억원으로 신청한 경우, 최대 지원비율(90%)은 6.3억원이며, 지원한도(5억원)이내 이므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 총 조사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은 민간 부담

<투자지원 관련>

Q. 국가 간 감축 실적 배분,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등은 국제감축실적 분배시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A. 국제감축실적 총 발급량*에서 국가간 감축 실적 배분 및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등을 위해 취소한 국제감축실적을 제외한 확보량에 대해 위탁·전담기관과 지원기업간 감축실적을 분배하게 됩니다.

* 감축 실적 배분,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등의 경우 양자협력 및 사업 초기시점 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협약시 총 예상 감축량 기준 분배량을 사전 계산

Q. 최종선정 이후 사업취소가 가능한가요?

A. 지원사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업포기가 아닐 경우, 정부지원금 반납과 더불어 사업포기각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모 신청이 불가하니, 사업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위반, 당초 계획(목적) 외 사용 등 위반사항에 따라 신청 제한기간 변동 가능

<타당성조사 지원 관련>

Q. 타당성조사 지원 규모 및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타당성조사 지원은 예타, 본타 지원으로 구분되며, 기업이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검토 및 심의위원 평가, 대상사업 선정 완료 후 조정 단계를 거쳐 사업비와 지원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지원사업 1건당 최대 예타 3억원, 본타 5억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90% 이내입니다.

Q.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완료된 후 투자지원 사업으로 연계 가능한가요?

A. 타당성조사 신청시 후속 국제감축사업으로 연계 동의하여야 타당성조사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타당성조사를 통해 '성공' 판정을 받아 사업성이 확인된 사업은 기후부 국제감축 본타/투자지원 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습니다.